

연 생 교 육 보 험

2010

이
학
사
업
망
표
서

통합사업방안서

별첨 제 1 호

연 생 고 육 보 험

1. 보험의 세목,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연령

구분 보종	보 험 의 세 목	보 험 료 납입기간	가 입 연 령	
			피보험자	계약자
1 총	입학축금보험(6세만기)	5년납, 전기납	0세 - 3세	18세 - 65세
	중 학 보 험(12세만기)	5 년 납	0세 - 9세	
	고 등 보 험(15세만기)		0세 - 12세	
	대 학 보 험(18세만기)		0세 - 15세	
	총 합 보 험(18세만기)		0세 - 12세	
10년 납				
2 총	중 학 보 험(15세만기)	전 기 납	0세 - 9세	
	고 등 보 험(18세만기)		0세 - 12세	
	대 학 보 험(22세만기)		0세 - 15세	
	총 합 보 험(22세만기)		0세 - 9세	

2. 건강조사 : 피보험자 : 무진사

계약자 : 유진사 (500만원이하 무진사) ✓

3. 여자보험료 할인 : 없음

4. 부가할 수 있는 특약 : 판매중인 각종 특약

통합 사업방법서

민법 제 2 호

종합사업 이서 별첨 제3호

연생교육보험 약관

제 1 조 (보험의 내용) ①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의 정함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한 보험금, 양육자금 또는 사망금부금을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 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드립니다.
 - 1종 가입자 -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입학금 지급.
 - 2종 가입자 - 피보험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하였을 때에 입학금, 학자금 및 졸업축하금 지급.
2. 계약자가 보험기간중 사망(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였거나 별표 2에 정한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 : 계약보험금액의 전액을 양육자금으로 지급하고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별표 2에 정한 2급 또는 3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0% 해당액을 사망금부금으로 지급합니다.
5.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육자금 및 사망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양육자금 및 사망금부금을 함께 드립니다.

7

② 회사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를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소정의 선지급 이자를 공제합니다.

제 2 조 (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1회 보험료 가수증을 고부하고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때(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 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보험증권의 고부는 승낙의 통지로 봅니다. 또한 제1항 단서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사일)로 부터 15일이 경과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본항에 규정한 15일 이내에도 회사는 계약(또는 ^{계약자}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제외)상의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가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④ 사망급부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합니다.

제 3 조 (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정 양식의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질문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1년(건강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4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그 계약의 납입방법과 지급방법에 따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과 지급 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에게 유예기간 만료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를 예고하고 그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 소정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부활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 7 조 (~~양육자금 또는 사망급부금~~^{보훈금 등}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양육자금의 지급 및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계약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 ~~피해~~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양육자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급부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이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계약자로 한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은 서면통지 또는 보험증권 배서의 방법에 의합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보험료의 납입기간

3. 보험기간

4. 보험금액의 감액

5.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장래의 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그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하는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후의 보험금액이나 보험기간이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기간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 양육자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망급부금의 청구)

수익자는 제1조에 정한 보험금, 양육자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양육자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소정의 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의 경우)
3. 상해진단서 (장해의 경우)
4. 보험증권
5.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본인에 한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양육자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1 조 (보험금, ~~양육자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망급부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0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3일 이내에 보험금, ~~양육자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을~~ ^{보령료 납입 면제금} 지급하거나 ^{사망 급부금 또는 양육자금은 지급하거나} 또는 ~~사망급부금을~~ ^{보령료 납입 면제금}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5일 이내에 보험금, ~~양육자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을~~ ^{보령료 납입 면제금}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지정한 지급 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 일수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양육자금 또는 사망급부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 (환급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및 제3항)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3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급금(별표 3 "환급금 예시표" 참조)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1. 회사 소정의 환급금 청구서
2.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본인에 한함)
3. 보험증권
4. 기타 계약지가 환급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한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제11조 제2항의 요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보령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해약시까지 보령료가 납입된 것으로 합니다.

제 13 조 (전쟁 기타 변란시 ^{상항 계약}의 양육 자금 ^{또는 사망금부금})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피질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양육 자금 또는 사망금부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은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드립니다.

제 14 조 (대표자의 지정 변경) ①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그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 15 조 (계약자에 대한 배당)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정한 비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금과 매 사업년도 말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적립한 확정배당금은 사업방법서에 정한 비에 따라 배당하고 이익배당금은 별도로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하여 드립니다.

제 16 조 (계약자 대부) 계약자는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청구권의 시효) 보험금, 양육자금, 사망금부금, 보험료 납입 면제, 해약환급금, 기타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청구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제 19 조 (계약자의 주소 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그의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알고있는 최종의 주소로 발송한 통지가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20 조 (보험증권의 재고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고부 등을 해드립니다.

제 21 조 (연령의 계산 및 착오의 처리) 연령의 계산 및 착오의 처리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별 표 1.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1 종)

1. 입학축금보험 - 피보험자가 만6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전액
2. 중학보험 - 피보험자가 만12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전액
3. 고등보험 - 피보험자가 만15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전액
4. 대학보험 - 피보험자가 만18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전액
5. 종합보험
 - 가) 피보험자가 만6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5%
(단, 3세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 나) 피보험자가 만12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10%
(단, 9세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 다) 피보험자가 만15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0%
단, 가입연령이 만1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보험금액의 30%.
 - 라) 피보험자가 만18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70%

(2 종)

1. 중학보험

가) 입학금 : 피보험자가 만12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frac{15}{30}\%$

나) 학자금 : (1) 피보험자가 만13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0%

(2) 피보험자가 만14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frac{25}{30}\%$

다) 졸업추하금 : 피보험자가 만15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frac{40}{20}\%$

2. 고등보험

가) 입학금 : 피보험자가 만15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frac{15}{30}\%$

나) 학자금 : (1) 피보험자가 만16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0%

(2) 피보험자가 만17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frac{25}{30}\%$

다) 졸업추하금 : 피보험자가 만18세에 달한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frac{40}{20}\%$

3. 대학보험

- 가) 입학금 : 피보험자가 만18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5%
- 나) 학자금 : (1) 피보험자가 만19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5%
- (2) 피보험자가 만20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5%
- (3) 피보험자가 만21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5%

4. 종합보험

- 가) 입학금 : (1) 피보험자가 만6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
보험금액의 2% (단, 3세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 (2) 피보험자가 만12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5%
- (3) 피보험자가 만15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5%
- (4) 피보험자가 만18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30%
- 나) 학자금 : (1) 피보험자가 만19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0%
- (2) 피보험자가 만20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0%
- (3) 피보험자가 만21세에 달한 계약용 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0%

별 표 2.

장애등급분류표

<p>1 급 (피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서 종신토록 항시 간호를 요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서 종신토록 항시 간호를 요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p>2 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 장애가 생기고 또한 다른 한팔이나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4급의 1부터 5까지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 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별 표 3.

혜 약 환 금 예 시 표

1 중

보 험 금 : 100만원
 피보 험 자 연 령 : 3세
 계 약 자 연 령 : 20 - 40세
 보 험 료 납 입 방 법 : 전 기, 월 납
 기준

보 험 종 류 구 분	임 학 축 금 보 험 (보 험 기 간 3년)		중 학 보 험 (보 험 기 간 9년)		고 등 보 험 (보 험 기 간 12년)		대 학 보 험 (보 험 기 간 15년)		중 합 보 험 (보 험 기 간 15년)	
	혜 약 환 금	납 입 보 험 료	혜 약 환 금	납 입 보 험 료	혜 약 환 금	납 입 보 험 료	혜 약 환 금	납 입 보 험 료	혜 약 환 금	납 입 보 험 료
1 개 월	0	28,700	0	7,390	0	4,960	0	3,610	0	4,550
6 개 월	122,930	172,200	5,730	44,340	0	29,760	0	21,660	0	27,300
1 년	275,870	344,400	41,460	88,680	15,310	59,520	1,070	43,320	11,170	54,600
3 년	만 기	1,033,200	209,360	266,040	121,140	178,560	73,060	129,960	107,130	163,800
5 년			417,660	443,400	251,460	297,600	160,850	216,600	162,110	273,000
7 년			676,790	620,760	412,500	416,640	268,370	303,240	291,230	382,200
9 년			만 기	798,120	612,090	535,680	400,550	389,880	450,520	491,400
12 년					만 기	714,240	652,850	519,840	616,180	655,200
15 년							만 기	649,800		819,000